

2025년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사업 수행기관 모집 공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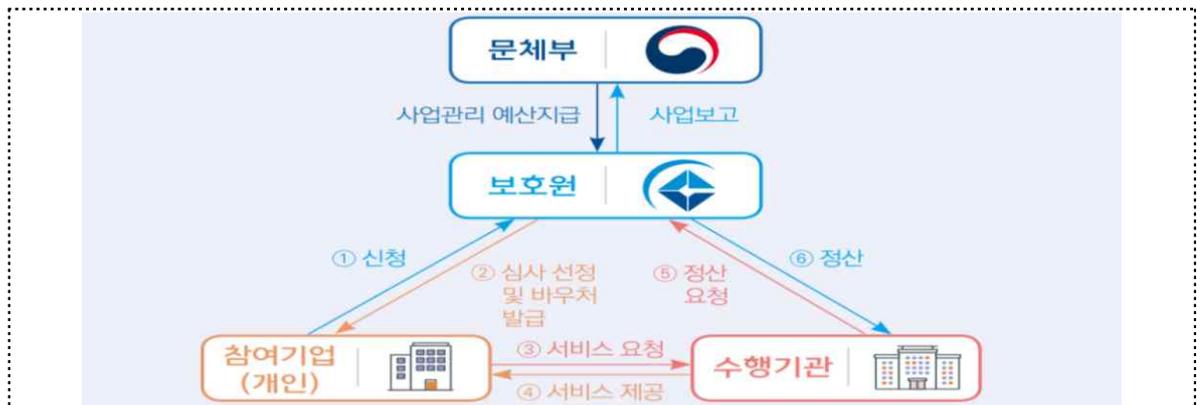
해외로 진출하는 국내 콘텐츠 기업(개인)의 경쟁력 강화 및 한류 콘텐츠 보호를 위한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사업」의 수행기관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5년 3월 24일
한국저작권보호원장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해외로 진출하는 국내 콘텐츠 기업(개인)을 대상으로 해외 저작권 침해 예방·분쟁 해결에 필요한 비용을 바우처로 지원하여 한류 콘텐츠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저작물 보호에 기여



□ 지원대상

- **(개별대응)** 콘텐츠 해외 수출(수출예정, 직·간접수출 포함) 국내기업 및 개인
 - * 협회/단체 참여 시 정당한 위임절차를 통해 저작권자 본인명의(대리인명의 신청은 불가)로 신청, 위임장 필수 작성
- **(공동대응)** 해외에서 공통된 저작권 침해 분쟁 이슈를 보유한 국내기업 및 개인 3개社 이상으로 구성*된 '협의체'
 - * 기업으로만 구성된 협의체의 경우 중소기업 과반수 이상 포함
 - ** 협의체: 대표 기업 또는 대표 신청자를 지정(간사)하여 신청, 3자계약 및 정산 등 행정 절차를 총괄하도록 함, 대표 기업(신청자)은 협의체 구성원 중 하나로, 협의체의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며 계약 당사자로서 3자계약을 체결할 책임을 가짐

□ **지원방식**

- 신청기업 또는 개인이 지원 한도 내에서 각자 필요로 하는 수행 기관의 저작권 보호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

□ **지원유형**

- **(개별대응) 총 바우처 상한 1억원(정부지원금 최대 9,500만원)**
 - ①기업 유형별 차등 지원, ②개인 유형별 구분없이 신청
- **(공동대응) 총 바우처 상한 1.5억원(정부지원금 최대 14,250만원)**
 - ①기업 유형별 차등 지원, ②개인 유형별 구분없이 신청

구분			정부 지원금 (비율)	기업(개인) 부담금 (비율)	모집방식	
개별	바우처 유형	기업 매출액* 규모 (최근 3개년 평균)				
	개별	기업	'가'형	30억원 이하	95%	상·하반기 *예산소진시 마감
'나'형			30억원 초과~400억원 이하	70%		
'다'형			400억원 초과	50%		
개인		-	95%	5%		
공동** (협의체)	기업	'가'형	30억원 이하	95%	5%	
		'나'형	30억원 초과~400억원 이하	70%	30%	
		'다'형	400억원 초과	50%	50%	
	개인	-	95%	5%		

* 평균매출액 등을 산정하는 경우 매출액은 회계관행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의미

** '공동대응'의 참여기업(개인) 부담금(비율)은 협의체 구성원 간 균등 분배 또는 합의에 따라 부담

□ **수행서비스:** 세부내용(p.6) 참조

□ **수행기간:** 수행기관 지정일로부터 3년*(~'28. 6.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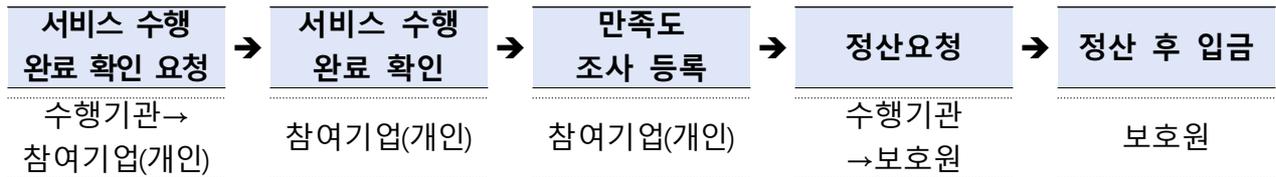
* 희망시, 계약기간 종료 후 내부심사를 거쳐 수행기간 연장 가능

□ **정산**

- 참여기업 또는 개인이 이용하고자 하는 서비스 금액이 바우처 잔액보다 큰 경우, 수행기관의 동의를 거쳐 초과금액은 자부담
- 부가가치세는 수행기관의 정산 요청 시기에 참여기업 또는 개인이 수행기관에 직접 납부
 - * 부가가치세는 국고보조금으로 지원 불가하여, 참여기업 또는 개인이 자기부담금 외 별도 부담

- (정산절차) 수행기관의 서비스 수행완료 확인요청에 따라 서비스 수행 확인 및 만족도 조사를 등록하고, 이후 절차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며, 정산을 신청

* 전자세금계산서 등 보호원이 요청하는 서류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환수법」 및 문체부 「보조금 교부조건」을 준용하여 정산수행 예정

【 2025년 주요 변경 사항 】 공동대응 시범운영 및 신규(가점·평가회) 도입

변경사항	'24년	'25년																																																														
지원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콘텐츠 해외 수출(수출예정, 직간접수출 포함) 국내기업 및 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별대응) 콘텐츠 해외 수출(수출예정, 직간접수출 포함) 국내기업 및 개인 (공동대응) 해외에서의 공통된 저작권 분쟁 이슈를 보유한 콘텐츠 해외 수출 국내 기업 및 개인 3개社 이상으로 구성된 협의체 * 지원서비스 '소송' 서비스로 한정 																																																														
지원범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 바우처 상한: 1억원 (정부지원금 최대 9,5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별대응) 총 바우처 상한: 1억원 (정부지원금 최대 9,500만원) (공동대응) 총 바우처 상한: 1.5억원 (정부지원금 최대 14,250만원) 																																																														
지원유형	<table border="1"> <thead> <tr> <th>바우처 유형</th> <th>기업 매출액 규모 (최근 3개년 평균)</th> <th>정부지원금 (비율)</th> <th>기업부담금 (비율)</th> </tr> </thead> <tbody> <tr> <td>'가'형</td> <td>30억원 이하</td> <td>95%</td> <td>5%</td> </tr> <tr> <td>'나'형</td> <td>30억원 초과 ~ 60억원 이하</td> <td>70%</td> <td>30%</td> </tr> <tr> <td>'다'형</td> <td>60억원 초과 ~ 100억원 이하</td> <td>60%</td> <td>40%</td> </tr> <tr> <td>'라'형</td> <td>100억원 초과</td> <td>50%</td> <td>50%</td> </tr> </tbody> </table>	바우처 유형	기업 매출액 규모 (최근 3개년 평균)	정부지원금 (비율)	기업부담금 (비율)	'가'형	30억원 이하	95%	5%	'나'형	30억원 초과 ~ 60억원 이하	70%	30%	'다'형	60억원 초과 ~ 100억원 이하	60%	40%	'라'형	100억원 초과	50%	50%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2">구분</th> <th rowspan="2">정부 지원금 (비율)</th> <th rowspan="2">기업 부담금 (비율)</th> </tr> <tr> <th>바우처 유형</th> <th>기업 매출액 규모 (최근 3개년 평균)</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5">개별</td> <td>'가'형</td> <td>30억원 이하</td> <td>95%</td> <td>5%</td> </tr> <tr> <td>'나'형</td> <td>30억원 초과~400억원 이하</td> <td>70%</td> <td>30%</td> </tr> <tr> <td>'다'형</td> <td>400억원 초과</td> <td>50%</td> <td>50%</td> </tr> <tr> <td>개인</td> <td>-</td> <td>95%</td> <td>5%</td> </tr> <tr> <td rowspan="4">공동 (협의체)</td> <td rowspan="3">기업</td> <td>'가'형</td> <td>30억원 이하</td> <td>95%</td> <td>5%</td> </tr> <tr> <td>'나'형</td> <td>30억원 초과~400억원 이하</td> <td>70%</td> <td>30%</td> </tr> <tr> <td>'다'형</td> <td>400억원 초과</td> <td>50%</td> <td>50%</td> </tr> <tr> <td>개인</td> <td>-</td> <td>95%</td> <td>5%</td> </tr> </tbody> </table>	구분	구분		정부 지원금 (비율)	기업 부담금 (비율)	바우처 유형	기업 매출액 규모 (최근 3개년 평균)	개별	'가'형	30억원 이하	95%	5%	'나'형	30억원 초과~400억원 이하	70%	30%	'다'형	400억원 초과	50%	50%	개인	-	95%	5%	공동 (협의체)	기업	'가'형	30억원 이하	95%	5%	'나'형	30억원 초과~400억원 이하	70%	30%	'다'형	400억원 초과	50%	50%	개인	-	95%	5%
바우처 유형	기업 매출액 규모 (최근 3개년 평균)	정부지원금 (비율)	기업부담금 (비율)																																																													
'가'형	30억원 이하	95%	5%																																																													
'나'형	30억원 초과 ~ 60억원 이하	70%	30%																																																													
'다'형	60억원 초과 ~ 100억원 이하	60%	40%																																																													
'라'형	100억원 초과	50%	50%																																																													
구분	구분		정부 지원금 (비율)	기업 부담금 (비율)																																																												
	바우처 유형	기업 매출액 규모 (최근 3개년 평균)																																																														
개별	'가'형	30억원 이하	95%	5%																																																												
	'나'형	30억원 초과~400억원 이하	70%	30%																																																												
	'다'형	400억원 초과	50%	50%																																																												
	개인	-	95%	5%																																																												
	공동 (협의체)	기업	'가'형	30억원 이하	95%	5%																																																										
'나'형			30억원 초과~400억원 이하	70%	30%																																																											
'다'형			400억원 초과	50%	50%																																																											
개인		-	95%	5%																																																												
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여기업(개인) 선정 심사 시 가점 항목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여기업 선정 심사 시 중소기업(개인·개인사업자 포함) 가점 부여(5점) 																																																														
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행기관) 결과보고서 및 정산 서류 제출 → (보호원) 자체 검토 후 정산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행기관) 결과보고서 및 정산 서류 제출 → (보호원) 오프라인 성과평가회 개최하여 수행기관별 성과 점검 및 평가 																																																														

2. 추진절차

구 분	주체	내용
사업신청	참여기업 (개인)	· 필요서류 작성 후 개별 신청
심사·선정	보호원	· 1차 서류심사, 2차 제안서 심사 → 선정
중요 서비스 선택, 협약	참여기업 (개인), 수행기관	· (참여기업, 개인) 수행기관의 메뉴판 등 정보 확인 후 원하는 수행기관의 서비스 선택 · (수행기관) 참여기업과 수행서비스 범위 등 세부 내용 협의
자부담금 납부	참여기업 (개인)	· 바우처 유형(가~다형)별 비율에 따른 자부담금 선납
중요 3자 계약체결	보호원, 참여기업 (개인), 수행기관	· 보호원-참여기업(개인)-수행기관 3자 계약체결 - (수행기관) 표준계약서 내 참여기업과 수행기관이 협의한 내용 (서비스 내용, 계약금액) 작성 및 서명 날인 → (참여기업, 개인) 확인 후 서명 날인 → (보호원) 최종 확인 후 서명 날인 * (수행기관) 선금금 요청시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제출 * 계약내용 변경 시, 보호원의 승인 필요
바우처 발급	보호원	· 포인트 형식으로 발급
서비스 이용	참여기업 (개인)	· 수행기관을 통해 필요 서비스 이용
서비스 완료	수행기관, 참여기업 (개인)	· (수행기관) 서비스 수행 완료 후 보호원에 확인 요청 → (참여기업, 개인) 완료 확인 및 만족도 조사 진행 → (수행 기관) 결과보고서 및 정산 서류 제출
중요 성과평가 (10월 예정)	수행기관, 보호원	· (수행기관) 성과평가회 참석 및 결과 보고 → (보호원) 수행 기관별 성과 점검 및 적정성 등 평가 * 성과평가회는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오프라인으로 진행(단, 평가회 참석이 어려운 해외 수행기관의 경우 온라인(화상) 회의 혹은 서면으로 진행)
중요 정산	보호원	· (보호원) 정산서류 최종 확인 및 정산수행 → (보호원) 정산 금액 입금 * 필요시 환급절차 진행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5. 3. 20.(목) ~ '25. 4. 13.(일) * 상·하반기 모집 예정

□ 신청자격

- 바우처 지원사업 메뉴판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인, 개인 사업자 또는 기관(대학, 연구소, 공공기관 등)(이하 '법인'이라 함)

신청 제외 대상

1. 휴·폐업 중이거나 부도, 화의, 법정관리 중인 법인
2.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법인 (법인 및 대표자 각각 확인 필요)
3. 정부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사업참여 제한 중인 법인
4. 실적 확인이 불분명하거나 관련분야 취급 확인이 불가능한 법인
5. 보호원의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으로서 수혜를 받고 있는 법인

□ 신청절차

신청 접수	→	심사	→	선정 통보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시스템' 내 접수		요건검토→서면평가 제안서 심사→승인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지
참고 사항	•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은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시스템(https://voucher.kcopa.or.kr)으로 접수하며,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 서류는 제출 서류명을 정확히 기재하여 PDF로 각각 변환하고, 폴더명을 "수행 기관명"으로 압축하여 제출			

□ 신청분야

○ 지원 서비스 분류 (* 제공 가능한 서비스에 따라 중복 지원 가능)

(단위:백만원, 건·회당 기준)

서비스 항목		세부 내용	서비스 설명	지원 상한액
대응 전략	저작권 불법유통 감사·조사	합법 유통시장조사	콘텐츠의 온·오프라인 주요 유통 매체 및 경로별 시장 현황(콘텐츠 가격, 선호도, 이용경로 등) 조사	30
		불법 시장 및 침해 현황 조사(오프라인)	해외 현지 불법저작권 유통 현황(주요 매체, 유통량, 유통경로, 지출금액 등), 시장 규모 등 조사	30
		저작권 침해 모니터링(온라인)	해외 현지 온라인 사이트에서의 저작물 침해 현황(게시수량, 가격, 이용량 등) 조사	70
대응	저작권 보호전략 컨설팅	법제조사 및 대응전략 수립	저작권 보호, 합법 유통 및 침해대응 위한 현지 법령 및 대응 전략 수립	20
		저작권 수출계약서 검토	수출계약시 저작권 라이선스 설정, 권리양도 등 계약의 적정성 검토	10
		침해대응 기술 적용 방안 검토	저작권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워터마크 등) 적용 방안 등 기술 대응 전략 자문	10
침해 대응	저작권 침해감정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을 위한 저작물성 판단, 실질적 유사성 여부 등 감정	60
	침해대응 지원	경고장 발송	침해자에 대한 법적 대응을 위한 경고장 발송	60
		소송(민·형사, 행정)	저작권 침해 분쟁 발생시 해외 현지에서의 소송 변호사 선임 비용 지원 (* 성공보수는 지원 제외)	100 (협의체:150*)
	소송 외 대응	저작권 침해대응을 위한 해외 현지 구제조치 및 소송외 분쟁 해결절차 등 대응 조치 비용 지원, 저작권 등록 지원	60	

* 협의체 당 '공동대응' 지원 상한액은 소송(민·형사, 행정) 서비스에 한함

4. 제출서류 안내

- ※ 제출서류의 파일명을 아래와 같이 정확하게 기재 후 pdf로 각각 변환하고, 폴더명을 “수행기관명”으로 압축하여 제출
- ※ 유효기간이 있는 증빙서류의 경우, 신청 마감일 내 유효기간이 해당되어야 인정함
- ※ 평가항목별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시 해당 평가항목 0점 부여(별도 보완요청 없음)

□ 제출서류

구분	번호	제출서류
필수서류	1	수행기관 신청서 [별지서식 1]
	2	청렴계약 이행각서 [별지서식 2]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지서식 3]
	4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별지서식 4]
	5	사업수행 제안서 [별지서식 5]
	6	유사과제 수행실적 총괄표 [별지서식 6]
	7	신용평가등급확인서
	8	사업실적증명서
	9	사업자등록증명원
	10	최근 3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11	납세증명원(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2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가점서류	13	사회적기업 인증서

* 상기 요청서류의 제출거부, 고의누락 시에는 수행기관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필수서류

○ 신청서

- 1개 이상의 수행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중복 체크 후 제출
- 전체 직원 수의 경우,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기준 인원을 기재

○ 청렴계약 이행각서

- 대표자 서명 후 제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대표자, 실무책임자 서명 후 제출

○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 대표자 서명 후 제출

○ 사업수행 제안서

- 개조식으로 작성
- 참여기업이 수행기관 검색 시, 제공되는 정보이므로 신중히 작성 요망

○ 유사과제 수행실적 총괄표

- 최근 3년간 유사과제 수행실적 기재
- 해당 내용 증빙가능한 경우만 기재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신청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발급본 제출
- 공공기관제출용으로 발급

○ 사업실적증명서

- 최근 3년간 유사과제 수행실적에 대한 사업실적증명서 각 1부를 제출하며, 아래 표 기재항목을 포함할 것

* 사업실적증명서 발급 불가 시 보호원으로 문의 요망

- 나라장터 발급 사업실적증명서의 경우 QR코드 포함된 사본 제출
- '정부 대상 혹은 알리오 공시 공공기관'과의 용역의 경우, '사업 실적증명서' 제출이 어려울 경우 계약처, 금액, 기간, 내용 등이

포함된 계약서 사본과 계약금액 전체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동시 제출

구분	기재항목
신청법인	법인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이행 실적내용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수행기간, 계약금액(공동계약 시 비율 표시)
증명서 발급기관	기업(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기관날인

○ **사업자등록증명원**

- 신청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 제출
- 국세청 발급 사업자등록증명원
-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포괄양도양수계약서 및 폐업사실 증명원 제출
- 법인전환 외 단순 사업자명 변경 시, 사실증명(사업자등록변경 내역)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및 제출용 발급 필수) 제출

○ **최근 3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설립 3년 미만 기업의 경우 제출 가능한 연도분 표준재무제표증명만 제출
- 3년 이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이전 사업자의 해당연도 재무제표증명원도 포함하여 제출 (단, 폐업사실증명원 및 포괄양도양수 계약서 제출 필요)

○ **납세증명원(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 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 제출
- (법인의 경우) 법인의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개인사업자 및 공동 대표인 경우) 공동대표 모두의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개인사업자 및 각자 대표인 경우) 신청하는 대표(1인)의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직원 개인정보(성명, 주민번호) 블라인드 처리 후 제출

- 신청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 제출
-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모두 가입되어있어야 함
- 상근인력만 인정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발급이 어려울 경우에 한하여 신청일 기준 발급 가능한 가장 최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 **가점서류**

○ 사회적기업 인증서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문의

3. 해외 수행기관

□ 신청자격

- 필수 한국인이거나,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인력이 속해 있는 기관
- 아래 중에서 한가지만 해당하여도 신청 가능
 - 국내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해외 지사인 법인 또는,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지만 한국 지사가 있는 법인
 - 국내 대리인(변호사 등)과 업무적 네트워크가 형성된(업무수행 경험이 있는) 해외 대리인(변호사 등)이 속해 있는 법인
 - 중국, 태국, 필리핀 및 베트남 '해외저작권센터'와 저작권침해대응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법인
 - 타 기관 유사 바우처 사업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법인 중에서 수행실적평가 등을 통해 검증받은 기업
 - 기타 본 사업 수행기관으로서 위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운영 위원회가 인정하는 법인

□ 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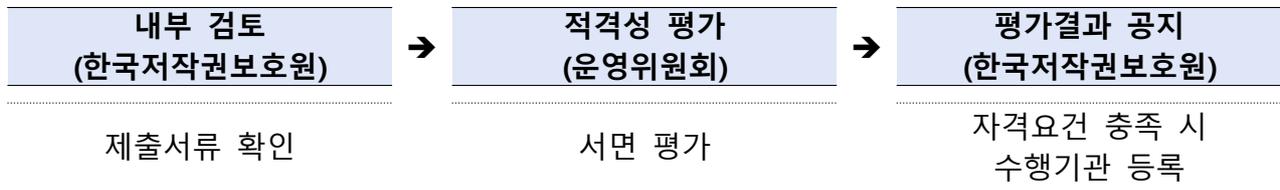
- 국내 수행기관과 동일한 수준의 평가기준 적용
 - (제출) 평가기준에 맞는 심사가 가능한 증빙서류
 - 예: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실적증명서, 표준 재무제표증명원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직원 급여지급 목록)
 - (발급) 해당국가의 공식 정부 및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발급*
- * 발급 서류는 중요원어 및 한국어 번역본(기업날인 필수) 모두 제출
- ☞ 해외 현지 사정에 맞게 제출서류 변경 가능(보호원 심사를 거쳐 서류 적격성 인정 여부 확정)

4. 수행기관 선정

□ 심사방법

- 사업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한 적격성 심사(Pass/Fail 방식)
 - 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을 얻은 경우 선정(절대평가)
- (1차) 보호원 내부 검토, (2차) 운영위원회 위원 심사(서면)
 - * 필요시 회의 참석을 통한 설명 요청이 있을 수 있음

□ 심사절차



□ 결과통보

- 선정 결과는 보호원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이메일 발송

5. 유의사항

- (제출서류 관련) 제출된 수행기관 등록 신청서의 내용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승인이 없는 한 변경 불가함
 - 제출된 서류는 수행기관 등록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신청기관의 제출서류가 허위로 사후에 확인된 경우 수행기관 등록은 무효가 될 수 있음
 - 본 공고와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 (사업 참여 제한)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행기관의 사업 참여는 제한될 수 있음
 - 수행기관 및 참여업체 간 담합행위, 허위비용 청구
 - 허위로 지원사업 계획 수립 및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 계약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기타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 (국세·지방세 납입) 수행기관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어야 지원 가능함
- (수행계획 및 인력 변경) 수행계획 및 인력의 변경이 있을 때는 보호원에 즉시 보고하고 해당 내용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바우처 서비스 제공 범위) 바우처 서비스는 국내 활동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소송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성공보수는 국고조보금으로 지원이 불가함
- (자료 비공개 제재조치) 지원사업 결과물의 평가 시 주요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사업비 정산내역 불인정 및 향후 해당 수행기관에 대한 사업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부정행위 및 부정신청 제한) 부정행위 또는 부정신청이 확인된 경우 정부지원금 환수 및 민형사상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해당 수행기관은 향후 보호원 사업에 참여가 제한됨

-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

※ 본 사업의 취지에 반하는 부당거래, 부정신청, 기타 부정행위시에는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및 형사 고발 조치, 정부기관(국회, 감사원 등)에의 부정행위 적발사실 통보 등 가능

7. 문의처

□ 한국저작권보호원 해외사업부

- (대표전화) 02-3153-2459
- (대표 이메일 주소) cvoucher@kcopa.or.kr

붙임 1

선정심사 기준

구분 (정량)	평가항목	평가 세부 내용	배점
업체역량 (10)	신용평가 등급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 정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경우 신용평가 등급 불 필요(최고점 부여)	5
	관련분야 업력	○ 관련분야 서비스 시작 시점부터의 경과년수 - 국세청 발급 사업자등록증명원	5
수행역량 (10)	유사과제 수행실적 건수	○ 최근 3년간 유사과제 수행실적 건수의 합 - 사업실적증명서	5
	유사과제 수행실적 금액	○ 최근 3년간 유사과제 수행실적 금액의 합 - 사업실적증명서	5
안정성 (10)	매출액	○ 최근 3년간 매출액 평균 - 홈택스 발급 최근 3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5
	조직규모	○ 인력 규모 (상근인력만 인정) - 4대 사회보험 사업자 가입자 명부	5
정부정책 부합성 (가점)	사회적 기업인증	○ 사회적기업 참여 우대지원 -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발급 사회적기업 인증서	+5

구분 (정성)	평가항목	평가 세부 내용	배점
수행 적정성 (70)	전문성	○ 저작권 바우처 사업에 대한 전문성 및 강점	20
	사업 이해도	○ 기업이 신청한 지원사업 분야 이해도	15
	제안내용 충실성	○ 지원사업 수행 제안서 내용구성의 충실성	15
	수행역량 및 수행전략	○ 수행역량 종합평가 및 사업수행을 위한 전략의 우수성	20

붙임 2 제출서류 발급가이드 (수행기관)

평가항목	서류명	발급기관	발급방법	기타사항		
필수서류		수행기관 신청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기업(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 및 활용동의서 사업수행 제안서 유사과제 수행실적 총괄표	별지서식[1~6] 참조			
	신용평가 등급	기업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정보회사 (이스디앤비, 나이스평가정보(주), SCI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나이스신용평가(주), (주)이크레더블)	해당 신용정보회사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및 해당 기관의 신청절차를 통해 발급	* 신용정보회사마다 비용 및 발급기간 상이함(평가자료 제출 1~2주 정도 소요, 별도 지불시 추가비용 발생 가능)	
	관련분야 업력	사업자등록 증명원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 민원증명 → 사업자등록증명원 신청/발급		
	유사과제 수행실적 건수·금액	사업실적 증명서	각 해당 기관			
	매출액	최근 3년 표준재무제표 증명원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 로그인 → 민원증명 →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신청/발급	* 최근 3개년 발급	
	인력규모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 로그인 → 증명서 발급	* 상근인력만 인정	
	체납여부 확인	납세증명원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국세 완납증명서] 국세청 홈택스 [지방세 완납증명서] 정부24	[국세 완납증명서]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 로그인 → 민원증명 → 국세증명신청 → 납세증명서 신청/발급 [지방세 완납증명서] 정부24(www.gov.kr) → 로그인 → 지방세 납세증명 신청/발급		
	가점서류	사회적기업 인증	사회적기업 인증서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발급기관별 상이, 별도문의	* 해당시 제출

* 평가항목별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시 해당 평가항목 0점 부여(별도 보완요청 없음)

붙임 3 제출서류 양식 (수행기관)

[별지 제1호 서식] 수행기관 신청서

접수번호				
맞출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서 (수행기관)				
수행기관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대표자명		종업원수(24년)	
	대표전화		홈페이지	www.
	주소			설립일
실무책임자	성명		소속(부서)	
	직위		유선전화	
	휴대전화		이메일	
수행 서비스 구분 (중복 가능)	구분	서비스 항목	세부 내용	
	대응전략	저작물 불법유통 감시 · 조사	<input type="checkbox"/> 합법 유통 시장조사 <input type="checkbox"/> 불법 시장 및 침해 현황 조사(오프라인) <input type="checkbox"/> 저작권 침해 모니터링(온라인)	
		저작물 보호전략 컨설팅	<input type="checkbox"/> 법제조사 및 대응전략 수립 <input type="checkbox"/> 저작물 수출계약서 검토 <input type="checkbox"/> 침해대응 기술 적용 방안 검토	
	침해대응	저작권 침해감정	<input type="checkbox"/>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	
침해대응 지원		<input type="checkbox"/> 경고장 발송 <input type="checkbox"/> 소송(민·형사, 행정) <input type="checkbox"/> 행정단속 등 소송 외 대응조치		
기타 정보 (해당시 제출)	사회적 기업		<input type="checkbox"/> 해당 /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p>관계 법령과 규정, 기준을 준수하고 관리기관의 가이드라인을 따르며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p> <p>*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대표자(실무책임자)의 메일링, SMS 수신서비스에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법 인 명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p>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본인)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 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사업'의 특정인의 선정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수행기관 선정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수행기관 선정에 있어서 특정인의 선정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주관하는 사업에 사업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수행기관 선정에 있어서 업체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서비스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선정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시행하는 사업에 사업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주관하는 사업에 사업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사업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또한 사업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은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주관하는 사업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사업보증금을 납부하겠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계약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수행기관으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3자계약을 이행하고, 사업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저작권보호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법 인 명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2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필수항목)

수집 항목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성명, 휴대전화번호, 회사전화번호, 소속 및 직위 이메일주소, 회사 주소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사업의 운영 및 관리	3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의 내용 또는 제한사항

- 귀하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필수 항목 수집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사업 참여가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대상 변경 시 기존에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폐기합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법 인 명 :

이 름 : (인 또는 서명)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기업(신용)정보의 수집 · 이용 · 제공 · 조회 및 활용 동의서

당사(본인)는 한국저작권보호원의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제공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할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년월일, 연락처(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 기업(신용)정보(신용등급, 매출액 및 국세 등 체납 현황) • 기타신용정보(사회보험료 관련 정보,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 등에 기재된 정보)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추진하는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사업과 관련 참여, 선정을 위한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한 자료, 사업관리시스템에서 지원 이력 정보로 활용,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당사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업체 대표 전화번호 등)를 바우처 서비스 메뉴판에 게시 등	3년

※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 귀하는 위의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사업 참여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기업(신용)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기업(신용)정보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 기관	제공·조회 목적	제공·조회할 기업(신용)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용정보회사 : 한국 기업데이터(주), NICE신용평가정보(주)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여신금융협회 등 보증기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보호원, 바우처 지원사업 시스템 운영기관 	<p>한국저작권보호원이 추진하는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사업과 관련 참여, 선정을 위한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한 자료, 사업관리시스템에서 지원 이력 정보로 활용, 사업 사후관리,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바우처 지원사업 관련 정책자료로 활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년월일, 연락처(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기업(신용)정보(신용등급, 매출액 및 국세 등 체납 현황) 기타신용정보(사회보험료 관련 정보,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 등에 기재된 정보) 	<p>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년까지 보유·이용 다만, 귀하의 신청이 보호원 또는 귀하의 의사에 의하여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이 소멸함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금융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만 보유·이용</p>

※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 귀하는 위의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사업 참여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기업(신용)정보 제공 및 조회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법 인 명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사업수행 제안서

- ※ 제안서 내용은 개조식으로 작성해야 하며, 주요 제목은 수정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 본 제안서 내용은 참여기업이 수행기관을 검색할 때, 공개되는 정보입니다.

1. 기관 현황

- 주요 연혁(실적)
- 수행인력 소개

2. 서비스 영역 및 수행 계획

- 제공 가능한 서비스 항목 기재
- 서비스 항목별 수행 계획을 기재

3. (신청기관의) 특징 및 장점

- 사업 수행 관련 인적, 물적 자원 및 사업수행 노하우 등을 기재

[별지 제6호 서식] 유사과제 수행실적 총괄표

유사과제 수행실적 총괄표

	사 업 명 (수행기간)	사업개요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1					
2					
3					
계	0건		00원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바우처 지원사업 서비스 메뉴판과 관련된 것만 기재
 * 본란에 기재한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사업실적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며, 첨부하지 않은 사업은 인정하지 않음